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나. 의안번호 : 제 2273 호

다. 발의일자 : 2021. 04. 01.

라. 회부일자 : 2021. 04. 06.

2. 제안이유

○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수위 상승 또는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안 제8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안 제8조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 수변무대 등의 사용허가에 대해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감염병 등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행 조례에서는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청계천 이용시설[1]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2]하여야 하고 시장은 동 조례 제6조[3]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함.

---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청계광장
2. 수경시설
3. 수변무대
4. 휴게시설
5 자연학습장 등 그 밖의 시설

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이용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8조 제1호에서 제3호[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청계천 수위 상승, 감염병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서울시만 33,441명(2021.4.8. 0시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강우로 연평균 31회(〔표 2〕 참조)의 청계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계천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2] 최근 5년간 청계천 출입통제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 균
출입통제 통제횟수	32회	34회	32회	31회	26회	31회

3)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설치목적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최근 5년간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청계천 이용시설 중 청계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례(1건)가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심의[5]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사유로 청계광장 및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취소가 권고(총무과-4380, 2020.2.10.)됨에 따른 것임.

[표 3] 최근 5년간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사유	건수	사유	건수	사유	건수	사유	건수	사유
청계광장	-		-				1	코로나19	-	
기타시설	-		-				-		-	

5)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